#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4549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정춘생·조 국·신장식

김재원 · 김선민 · 김준형

서왕진 · 차규근 · 황운하

박은정 · 강경숙 · 김종민

이해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함.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 -지방세 구조를 우선 70대 30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 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를 "1천분의 6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353을 지방소비세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특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비율을 매년 1%씩 각각 가감하여, 2034년에는 해당 비율을 1천분의 647 대 1천분의 353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	관한 특례) ①		
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			
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			
세를 더한 세액의 <u>1천분의 747</u>	<u>1</u> 천분의 647을 부		
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	가가치세로, 1천분의 353을 지		
<u>을 지방소비세</u> 로 한다	<u>방소비세</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